

대법원 2022도158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교육부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수정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도1586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 임의 수정
 - 피고인들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임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 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 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함
 -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하여 213개의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하여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함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①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② 편찬위원장을 배제하고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하기 위하여 편찬위원회 소속 편찬위원 1인을 집중 수정보완위원으로 선임한 후 그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교과서 심의진 명단에 기존 심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두게 하였으며, 교과서 수정·보완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행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 피고인들은 교과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함

2. 소송경과

▣ 제1심 : 전부 유죄¹⁾

- 피고인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 원심

- 피고인들 : 제1심판결 파기, 전부 무죄
- 원심의 무죄 판단 이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무죄

- 피고인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

1) 발행사 직원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벌금형의 선고유예), 미향소 확정됨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하여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님
- 피고인들이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에 근거하여 위촉한 집중수정보완위원회는 그 직위에 부합하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님
-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님

■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 무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여부
- 피고인들이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수정보완위원회와 교과서 발행사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